

소규모 특화사업

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지원안내 Q & A

“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”구매·설치비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및
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모두에 지원 가능



Q1
지붕이 설치된 건축물(축사·공장·창고 등)을 사용하는
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답변 A1

- 「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(떨어짐) 사업」의 보조 지원 대상은
다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 - 1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지붕·철골 건설 현장
 - 2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지붕이 있는 축사·공장·창고 등을
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
- ▶ 지붕 개·보수, 지붕 위 태양광 설치 등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현장도 지원 가능



Q2
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
설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나요?

답변 A2

- 아닙니다.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상
‘건설현장’으로 분류되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
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건설 현장으로 지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
- 1 건설현장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 - 2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이어야 합니다.
 - 3 보조금 신청자와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설치자가 달라야 합니다.





Q3

‘공사금액 50억원 미만’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설치비만 기준인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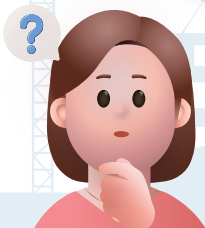


답변 A3

☑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설치비만이 아니라 해당
건설공사 총 비용(전체 도급금액 등)이 산정 기준

[총 공사금액(부가세 포함) 산정 예시]

공사유형	공사금액 포함 범위	판정기준
1 지붕 개·보수 공사	⇨ 지붕재 교체 + 구조보강 + 추락방지시스템 설치 등 전체 도급금액	50억원 미만
2 지붕 위 태양광 설치	⇨ 태양광 설비 구입·설치 + 기초·구조물공사 + 추락방지시스템 설치 등 전체 도급금액	
3 추락방지시스템만 단독설치	⇨ 추락방지시스템 납품·설치 계약 금액 (해당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)	



Q4

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
설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나요?

답변 A4

☑ 보조금 신청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가입자(사업주)이며, 반드시
신청자와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의 실제 설치자가 달라야 합니다.

[총 공사금액(부가세 포함) 산정 예시]

계약구조	설명 및 신청 예시	신청가능여부
자기공사 (사업주 직접공사)	⇨ 공장·축사주 등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시공자로서 공사를 진행하고, 추락방지시스템은 전문업체와 ‘납품·설치 계약’을 별도 체결 ※ 사업주 본인이 건설공사 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필요	가능
도급공사 (원수급인 신청)	⇨ 발주자(건물주)가 지붕공사를 전문 시공업체에 도급 ▶ 원수급인이 건설공사 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▶ 원수급인이 추락방지시스템 설치 부분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또는 납품계약하여 시공할 때 신청 가능	가능
신청자 = 설치자 (동일 업체)	⇨ 추락방지시스템 설치 전문업체가 스스로 공사를 하고 동시에 보조금도 신청하는 경우	불가

